

감 사 위 원 회

시 정 요 구

제 목 공사비(사급자재 인력 소운반비) 정산 부적정
관 계 기 관 도봉구(공원녹지과)
내 용

도봉구 공원녹지과(이하 '발주자'라 한다)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○○동에 예방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'15.10.20. W기업(이하 '설계자'라 한다)과 설계용역계약(금18,320천원) 및 '16.4.4. X기업(이하 '시공자'라 한다)과 공사계약(금353,423)을 체결하여 '2016년 ○○동권역 예방 사방공사'를 '16.4.4. 착공 및 '16.6.30. 준공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 제5항(검사)에 따르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,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, 2016. 1. 20. 이하 '행정안전부 기준'이라 한다) 제13장 제6절 1.(설계변경)에 따르면 발주자는 해당 공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·오류 또는 상호 모순점이 있을 경우, 또는 지질·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, 그리고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.

한편 동 공사 현장은 진입로의 폭이 3m~5m 확보되어 있고, 도로 경사가 평탄하여 1톤 차량이 현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다.

[그림] 공사 현장 진입로 현황



▲ ○○동 489-2 깎돌기습막이 설치 현장



▲ ☆☆동 산183 제형돌수로 설치 현장

그런데도 설계자는 위 공사의 깎돌기습막이(높이1.0~3.0m, 연장121m)와 제형(蹄形)돌수로(폭1.0m, 연장25m) 등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 설계서(물량내역서) 상 ‘인력 소운반’을 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였고, 발주자는 동 ‘인력 소운반’ 공종을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준공(정산) 처리하였다.

그 결과 현장 여건상 불필요한 공사비(사급자재 인력 소운반비) 12,600천원이 시공자에게 과다 지급되어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다.

[표] 공사비 과다지급 현황

(금액단위:천원)

위 치	자재 소운반비 현황							비고
	자재명	규격	수량	단위	준공금액(A)	재산정금액(B)	증감액(B-A)	
○○동 489-2	모래	인력+지게,L=20m	25.4	m ³	12,600	0	-12,600	과다 지급
	자갈	인력+지게,L=20m	26.1	m ³				
	깎 돌	인력+지게,L=20m	144.34	m ³				
☆☆동 183	모래	인력+지게,L=66.8m	20.2	m ³				
	자갈	인력+지게,L=66.8m	20.6	m ³				
	깎 돌	인력+지게,L=66.8m	123.14	m ³				

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

발주자는 감사지적과 관련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비는 해당 업체로부터 회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.

조치할 사항

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

‘2016년 ○○동권역 예방 사방공사’에서 시공자에게 과다 지급된 공사비 12,600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,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(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)하시기 바랍니다.(시정)